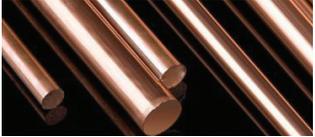


FTA를 통해 수출입 쌍방향 관세혜택을 얻다

1. 기업 및 제품소개

- D사는 국내 동 특수합금업계의 선도기업으로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각종 동 특수합금 소재를 생산·수출
- 제품소개

주요 수출품	HS CODE	제품사진
Round bar of refined copper	7407.10	

2. 활용 전 상황

- 동제품의 가공을 위해 원재료를 영국, 벨기에 등 EU 지역에서 수입하고, 동제품 가공품을 EU 및 미국 등으로 수출
- EU 지역에서 수입하는 크롬 동은 관세 5%를 수입 당시 부담하여야 하며, 수출물품에 대하여 관세 환급이 가능하나 이를 위한 추가 비용 및 수출입관련 시간 등 소요

3. 장애 요인

- 한·EU MC 50% 충족을 위해서는 주 원재료인 전기동 국산 사용이 필요
- MC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국내거래 공급자의 원산지확인서 발급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관련 제도 및 요건구비를 위한 설득 필요

4. 극복 방법

- 수출물품 HS(제7407.10호)의 한·EU FTA 원산지결정기준인 세번변경 기준(CTH)과 부가가치기준(MC 50%) 동시충족을 위한 방문 컨설팅 실시
- 서울세관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FTA 활용 지원으로 동사를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지정('11.06.07.)
- 한·EU FTA 인증수출자 지정시 확인한 수출물품 원재료의 HS 4단위 변경 및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한·미 FTA 활용

HS CODE	협정	기준세율	협정세율	원산지결정기준
7407.10	한·미 FTA	3%	0%	CTH(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)

5. 활용 효과

- 영국, 벨기에로부터 한·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원재료를 수입하여 원가를 절감하고 한·EU FTA 협정세율 적용받아 수출량 증가
* 수출액 \$764,436('11.1/4분기) ▶ \$1,398,708('12년1/4분기) 83% 증가
- 한·미 FTA 발효 즉시 자율증명서발급으로 협정세율 혜택
* 발효 후 1달 관세효과 인하액 : 892천불(8억9천만원) × 3% = 2,700만원
* 연간 관세효과 예상액 2,700만원 × 12 = 3억2,400만원
- 한·EU FTA 활용으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·미 FTA 체결 직후 즉시 자율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한·미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음으로서 전년 동기대비 83% 수출실적 증가

6. 시사점

- FTA 발효시기에 맞춰 활용방법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여, 원자재 수입 및 제품 수출에 FTA 활용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